

# 2021년 사회복지관 종합감사 결과

## □ 감사개요

- 인천광역시에서는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2021년 8월 30일 ~ 11월 5일까지 (28일간)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2018년 7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총 21건(본처분 19건, 현지처분 2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등 조치를 하였다.

## □ 감사결과

| 총괄현황 |     |      | 처분현황    |    |    |       |    |             |       |       |
|------|-----|------|---------|----|----|-------|----|-------------|-------|-------|
|      |     |      | 처분종류(건) |    |    |       |    | 재정상조치(건/천원) |       |       |
| 계    | 본처분 | 현지처분 | 계       | 주의 | 시정 | 개선·권고 | 통보 | 계           | 추징·회수 | 환급·감액 |
| 21   | 19  | 2    | 21      | 11 | 3  | 6     | 1  | 2,838       | 2,838 | -     |

# 2021년 사회복지관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 인천광역시

## 개선 요구

제 목 운영규정 등 개정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 1. 운영위원회 위원장 결정방식 부적정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3항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평구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규정」에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기관의 ◆◆로 정하고 있다.

### 2. 「인사관리 규정」 현행화 소홀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sup>1)</sup>,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관 운영기준 안내」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 보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추홀구 ◇◇사회복지관, 부평구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인사관리 규정」은 시설장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직원의 채용·경력인정·승진 최소연한 등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을 현행화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부평구청장은

[개선] 사회복지관 운영규정이 사회복지사업법 등 상위 규정에 맞게 개정되도록 조치하시고, 운영규정 현행화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지도·점검하여 향후 유사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인 천 광 역 시

## 시정 요구

제 목 시설종사자 경력인정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제3항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확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의 경력인정범위에서는 종사자의 호봉은 원칙적으로 근무년수 1년에 대해 1호봉을 인정하며, 호봉은 현 시설 근무경력에 본 지침에서 인정하는 경력을 합산하여 결정한다고 정하면서 경력인정 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경력 이외의 유사경력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sup>2)</sup>은 경력기간의 80%를 인정하여 호봉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평구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관에서는 유사경력으로서 경력

2) 유사경력 인정(80%)범위: 가. ①「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sup>\*</sup>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기간의 80%를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력기간을 100%로 인정하여 호봉을 결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감사대상 기간 중(2021. 6월 말까지) 총 613,350원의 급여가 과다 지급되었다.

[표] 유사경력 인정 적용 부적정 사례

| 군구명<br>(부서명) | 종사자명 | 경력인정<br>근무기관 | 인정대상<br>사유<br>(환산율) | 경력인정사항           |              |                 |              | 과다<br>지급액<br>(원) | 비고 |
|--------------|------|--------------|---------------------|------------------|--------------|-----------------|--------------|------------------|----|
|              |      |              |                     | 실 제              |              | 적 정             |              |                  |    |
|              |      |              |                     | 환산율<br>(인정경력)    | 호 봉<br>(승급월) | 환산율<br>(인정경력)   | 호 봉<br>(승급월) |                  |    |
| 계            |      |              |                     |                  |              |                 |              | 613,350          |    |
| 부평구<br>(△△)  | a    | ▽▽           | 유사경력<br>가.①(80%)    | 100%<br>(7월)     | 16호봉<br>(5월) | 80%<br>(5월 18일) | 16호봉<br>(6월) | 269,890          |    |
| 부평구<br>(◇◇)  | b    | ◎◎           | 유사경력<br>가.①(80%)    | 100%<br>(5월 15일) | 4호봉<br>(1월)  | 80%<br>(4월 12일) | 4호봉<br>(2월)  | 343,460          |    |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시정] 사회복지관 종사자 중 호봉 획정 부적정자에게 과 지급된 인건비(총 613,350원)을 환수하시고, 사회복지관 종사자 호봉이 규정에 맞게 획정되도록 철저히 지도·점검하여 향후 유사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주의 요구

제 목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부평구·서구

관 계 부 서 중구 △△과, 부평구 ○○과, 서구 ◇◇과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1. 공사계약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의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에서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 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5. 분할계약의 금지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 ●●사회복지관에서는 [표1]과 같이 공사내용, 발주시기, 장소 등이 유사한 공사를 분할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공사계약 분리발주 현황

(단위 : 천원)

| 연번 | 공사명  | 계약방법       | 계약금액   | 계약상대자 | 계약일        | 착공일        | 준공일        |
|----|------|------------|--------|-------|------------|------------|------------|
| 1  | ㄱㄱ공사 | 1인수의       | 13,717 | a     | '21.5.4.   | '21.5.12.  | '21.5.26.  |
|    | ㄴㄴ공사 | 나라장터<br>입찰 | 46,142 | b     | '21.5.17.  | '21.5.20.  | '21.6.9.   |
| 2  | ㄷㄷ공사 | 1인수의       | 22,000 | c     | '19.1.18.  | '19.1.19.  | '19.2.13   |
|    | ㄹㄹ공사 | 1인수의       | 21,897 |       | '19.2.1.   | '19.2.7.   | '19.2.13.  |
| 3  | ㅁㅁ공사 | 1인수의       | 17,710 | d     | '19.7.26   | '19.7.27.  | '19.7.29.  |
|    | ㅂㅂ공사 | 1인수의       | 18,480 |       | '19.8.7.   | '19.8.9.   | '19.8.14.  |
|    | ㅅㅅ공사 | 1인수의       | 19,910 |       | '19.8.22.  | '19.8.26.  | '19.8.29.  |
| 4  | ㅇㅇ공사 | 1인수의       | 11,966 | e     | '20.5.22.  | '20.5.28.  | '20.6.16.  |
|    | ㅈㅈ공사 | 1인수의       | 20,950 |       | '20.9.17.  | '20.9.18.  | '20.9.23.  |
|    | ㅊㅊ공사 | 1인수의       | 21,945 |       | '20.10.7.  | '20.10.8.  | '20.10.14. |
|    | ㅋㅋ공사 | 1인수의       | 20,927 |       | '20.10.23. | '20.10.24. | '20.11.2.  |
| 5  | ㅌㅌ공사 | 1인수의       | 21,272 | f     | '20.5.14.  | '20.5.15.  | '20.5.28.  |
|    | ㅍㅍ공사 | 1인수의       | 20,656 |       | '20.6.7.   | '20.6.8.   | '20.6.14.  |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2. 전기공사 통합발주에 관한 사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를 분할 계약하여야 한다.

「전기공사업법」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및 제4조(공사업의 등록)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전기공사)에서는 건축물의 전기설비 공사는 전기공사의 종류에 해당하고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평구 ▽▽사회복지관에서는 [표2]와 같이 공사를 건설공사와 통합하여 발주하였으며, 계약상대자의 전기공사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전기공사 미등록 업체 계약 현황

(단위 : 천원)

| 군·구명<br>(복지관명) | 공사명   | 계약금액<br>(전기공사 공종)  | 계약상대자 |                               |            | 계약일       |
|----------------|-------|--------------------|-------|-------------------------------|------------|-----------|
|                |       |                    | 업체명   | 건설업 등록                        | 전 기<br>공사업 |           |
| 부평구<br>(□□)    | ㄱㄱ 공사 | 32,256<br>(14,338) | a     | 실내건축공사 및<br>금속구조물·창호<br>·온실공사 | 미등록        | 2019.5.8. |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3.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의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에서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sup>3)</sup>을 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 여부 등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3) 다만,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으며, 경미한 경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 건설사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따라서 해당 공사의 공중에 따른 건설업을 등록하였는지를 확인 후 공사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구 ■■■사회복지관과 부평구 ◎◎사회복지관에서는 [표3]과 같이 건설공사 계약을 하면서,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 건설업 미등록 업체와의 공사계약

(단위 : 천원)

| 군·구명<br>(복지관명) | 공사명     | 건설업종                  | 계약금액   | 계약상대자 |       | 계약일         |
|----------------|---------|-----------------------|--------|-------|-------|-------------|
|                |         |                       |        | 업체명   | 건설업등록 |             |
| 중 구<br>(△△)    | ㄱㄱ 보수공사 | 실내건축<br>공사업<br>(전문공사) | 16,742 | a     | 미등록   | 2019.4.19.  |
| 부평구<br>(◇◇)    | ㄴㄴ 개선공사 |                       | 19,470 | b     | 미등록   | 2021.3.8.   |
| 부평구<br>(□□)    | ㄷㄷ 보수공사 |                       | 19,998 | c     | 미등록   | 2020.12.24. |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4. 선금보증 및 선금정산 미이행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지출의 특례)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제2절 4. 채권 확보에서는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선금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고,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부터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예규 제6장 제2절 5. 선금의 사용과 정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청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조건으로 명시해야 하며, 선금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성·기납 부분의 대가 지급시마다 선금 정산액 이상을 정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구 ◆◆사회복지관에서는 선금지급 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이행보증 기간이 적정하지 않은 선금보증증권을 제출받았으며, 대가(준공금) 지급 시 선금정산을 실시하지 않았고,

서구 ●●사회복지관은 선금지급 보증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받지 않았으며, 대가(준공금) 지급 시에는 선금정산을 실시하지 않았다.

## 5. 공사계약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 미반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사후정산의 대상으로 정하면서,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고,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에 따르면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예정가격에 반영하고, 입찰공고 시에는 이의 금액과 정산하게 된다는 내용을 명시

하여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이에 대한 실제 집행여부를 확인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평구 ○○사회복지관에서는 예정가격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입찰공고 시에도 금액 및 정산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

[표 5]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미반영 공사 현황

(단위 : 천원)

| 군구명<br>(복지관명) | 보조사업명<br>(공사명) | 입찰공고내용 |                                  |               |           | 계약금액   |               | 계약<br>상대자 | 계약일<br>(대금지급일)             |
|---------------|----------------|--------|----------------------------------|---------------|-----------|--------|---------------|-----------|----------------------------|
|               |                | 기초금액   | 공사기간                             | 국민건강<br>보험료 등 | 정산<br>과자부 | 총금액    | 국민건강<br>보험료 등 |           |                            |
| 부평구<br>(□□)   | □□ 공사          | 49,650 | '18.6.21.<br>~ 10.20.<br>(약 4개월) | 0             | ×         | 43,560 | 372           | a         | '18.6.21.<br>( '18.10.31.) |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6. 공사계약 기초금액 작성(예산 집행품의) 부적정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실무’에 따르면 예산의 집행품의는 세출 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집행의사를 결정하는 행위이며, 품의서 작성 시 집행예정금액은 예산액의 범위 이내인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서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시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7.745%(공사계약의 경우)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자로부터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집행품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공사계약의 경우 품의금액에 따라 작성된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7.745%) 이상의 제출견적 중 최저가격을 공사계약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관은 2019년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으나, 보조금 신청(결정)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품의, 예정가격 작성)을 실시하였고, 이로 인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낙찰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사회복지관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① 사회복지관 건설공사 계약 시 해당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한 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②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금보증은행 및 선금정산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사회복지관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① 사회복지관 건설공사 계약 시 해당 업종의 공사업을 등록한 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② 국민건강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계약 체결 시 사전공지 및 정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고,  
③ 예산액을 초과하여 집행 품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사회복지관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① 사회복지관의 공사 계약 시 공사량을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 ②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금보증이행 및 선금정산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주의·개선 요구

제 목 노인무료급식사업 식자재 납품 계약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부평구

관 계 부 서 중구 ○○과, 부평구 □□과

내 용

인천광역시 중구 및 부평구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을 위한 노인무료급식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 1. 입찰공고 기간 부적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5항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입찰공고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경우 2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구 □□사회복지관에서는 [표1]과 같이 2020년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입찰로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에 입찰공고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8일 전에 입찰공고하였으며, 2021년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이상의 입찰로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일 20일 전에 입찰공고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4일 전에 입찰공고하였으며,

부평구 ★★사회복지관에서는 2021년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이상의 입찰로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일 20일 전에 입찰공고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8일 전에 입찰공고하였고,

부평구 ☆☆사회복지관에서는 2019년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입찰의 경우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10일 전에 입찰공고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7일 전에 입찰공고하였으며, 2021년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경우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20일 전에 입찰공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4일 전에 입찰공고하였다.

[표 1] 무료급식 식자재 납품 계약 공고현황

| 군구명<br>(복지관명) | 연도별  | 계약명     | 계약방법         | 공고기간                  | 제안요청서<br>마감일 | 예정금액<br>(천원) | 적정<br>공고일 | 실제<br>공고일 |
|---------------|------|---------|--------------|-----------------------|--------------|--------------|-----------|-----------|
| 중구<br>(△△)    | 2020 | ㄱㄱ 업체선정 | 협상에<br>의한 계약 | '19.12.10.<br>~12.18. | '19.12.18.   | 83,761       | 10일 전     | 8일        |
|               | 2021 |         |              | '20.12.4.<br>~12.18.  | '20.12.18.   | 139,308      | 20일 전     | 14일       |
| 부평구<br>(▲▲)   | 2021 | ㄴㄴ 공개입찰 |              | '21.5.11.<br>~5.19.   | '21.5.19.    | 114,000      | 20일 전     | 8일        |
| 부평구<br>(■■)   | 2019 | ㄷㄷ 업체선정 |              | '19.3.8.<br>~3.15.    | '19.3.15.    | 96,000       | 10일 전     | 7일        |
|               | 2021 |         |              | '21.2.8.<br>~2.22.    | '21.2.22.    | 187,000      | 20일 전     | 14일       |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2. 제안서 평가 방법 부적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sup>4)</sup>.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제3절(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에 따르면 제안요청서에는 평가요소와 평가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제안서의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에 대해서는 [붙임]과 같이 기술능력평가(80점)[(정량평가 20점+정성평가 60점)]와 가격평가(20점)로 정하고 있다.

4)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구 △△사회복지관, 부평구 ▲▲사회복지관, 부평구 ◎◎사회복지관에서는 ① 입찰공고 시 제안요청서에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②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준수하지 않았다.

### 3.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소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제4절(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서는 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구 △△사회복지관에서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운영하면서, ① 7인 이상의 평가위원을 구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을 7인 이하로 구성하였고, ② 예비위원 명부 작성 및 추첨없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③ 평가위원의 대부분을 복지관 직원으로 구성하여 입찰참가자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부평구 ◇◇사회복지관에서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운영하면서, ① 7인 이상의 평가위원을 구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과 2021년에는 평가위원을 6명으로 구성하였고, ② 2019년 ~ 2021년에는 예비위원 명부 작성 및 추첨없이 평가위

원회를 구성하였으며, ③ 2019년 ~ 2021년 평가위원의 대부분을 복지관 직원으로 구성하여 입찰참가자 평가를 실시하였고,

부평구 ○○사회복지관에서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운영하면서, ① 2019년에는 평가위원을 6명으로 구성하였고, ② 2019년 ~ 2021년에는 예비위원 명부 작성 및 추첨없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③ 2019년 ~ 2021년에는 평가위원의 대부분을 복지관 직원으로 구성하여 입찰참가자 평가를 실시하였다.

#### 4. 전자계약서 미작성

「지방계약법」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2항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구 ◇◇사회복지관, 부평구 ●●사회복지관, 부평구 ◆◆사회복지관에서는 2019년 ~ 2021년 식자재 공급계약을 하면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부평구청장은

[주의] 사회복지관의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입찰공고기간, 제안서 평가방법 및 평가위원회 구성, 전자계약서 체결 등이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 주의·개선 요구

제 목 사업 수익금 집행 및 정산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중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인천광역시 중구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을 위한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수행을 위해 ■■사회복지관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1. 노인 무료급식사업 수익금 집행 부적정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제2항 및 제4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5-6.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에서는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독거노인 포함)에게는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 징수가 가능하나, 급식비로 징수한 수익금은 식재료비 등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 이외의 타 경비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경로식당 무료급식 보조사업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은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구 ◆◆사회복지관에서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강사비 지급 등의 경비로 사용하였다.

[표 1] 경로식당 수익금 중 보조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내역

| 계정명  |           | 지출일         | 세출계정 | 지출금액<br>(원) | 집행내역      |
|------|-----------|-------------|------|-------------|-----------|
| 관·항  | 세목        |             |      |             |           |
| 사업수입 | □□<br>급식소 | 계           |      | 659,150     |           |
|      |           | 2018.12.28. | ㄱㄱ   | 48,120      | aa 강사비 지급 |
|      |           | 2019.11.29. | ㄴㄴ   | 200,000     | bb 강사비 지급 |
|      |           | 2019.12.26. | ㄷㄷ   | 60,000      | cc 주유비 지급 |
|      |           | 2019.12.27. | ㄹㄹ   | 10,000      | dd 수수료 지급 |
|      |           | 2020.1.31.  | ㅁㅁ   | 72,000      | ee 강사비 지급 |
|      |           | 2020.3.13.  | ㅂㅂ   | 180,110     | ff 강사비 지급 |
|      |           | 2020.3.13   | ㅅㅅ   | 88,890      | gg 강사비 지급 |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 2. 노인 무료급식사업 수익금 정산 소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제4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등)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보조

금의 금액 확정)에 따라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라 적합한 것인지 심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구 노인 무료급식사업의 보조사업자인 △△사회복지관에서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에 따른 수익금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중구 △△과에서는 보조사업 수익금 집행의 적정에 대하여 심사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과장)은 사회복지관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①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련 수익금을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집행하도록 하시고,  
② 보조사업 수익금 집행에 대한 정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인 천 광 역 시

## 시정 요구

제 목 시설 공동운영비(무인경비용역료) 지출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제2항 및 제4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서구에서는 ■■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위하여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사회복지관 및 법인 부설시설에서는 무인경비용역료를 포함한 공공요금을 시설별 사용면적(사용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있으며, ‘복지관 및 부설시설 공공요금 납부비율 변경’[내부지원-038(2020.5.12.)호]에 따라 2020. 6. 1.부터 복지관 및 부설시설 공공요금 납부비율을 정하였고,

‘복지관 및 부속시설 공공요금 납부비율 변경’[202008-◇◇과-0012(2020.8.25.)호]에서는 2020. 9. 1.부터 ‘○○원에서 별도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 및 사용료 납부에 따라 ○○원 납부분 20%를 복지관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표 참조)

[표 ] 복지관 및 부속시설의 공공요금 부담율 변경현황

| 변경 적용일     | 계    | □□관 | △△원 | ◇◇센터 | ■■센터 | 변경사유                                |
|------------|------|-----|-----|------|------|-------------------------------------|
| 2020.6.1.~ | 100% | 54% | 20% | 18%  | 8%   |                                     |
| 2020.9.1.~ | 100% | 74% | -   | 18%  | 8%   | △△원 CAPS 별도설치에 따라 △△원 납부분을 □□관에서 지출 |

※ 자료출처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러나 감사결과 법인 부속시설인 ○○원은 별도의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한 것이 아닌 직원용 지문인식기를 별도 설치한 것으로, 복지관 및 부속시설의 무인경비시스템을 계속하여 이용하고 있었다.

결국, 2020. 9월부터 2021. 6월말 현재까지 ○○원의 무인경비용역료를 801,900원 (○○원 부담액 89,100원×9개월)을 사회복지관 시설운영비에서 지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시정] 사회복지관 부속시설인 ○○원의 무인경비용역료로 착오 지출된 801,900원에 대하여 회수하시고, 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시정 요구

제 목 법인회계와 시설회계 혼용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서구

관 계 부 서 미추홀구 ○○과, 서구 △△과

내 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재무·회계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및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같은 규칙 제6조(회계의 구분) 제2항에서는 법인의 회계는 법인회계,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시설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V.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1. 총칙에서는 [표]와 같이 법인회계와 시설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표]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내용

## 1) 사회복지법인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할 것

- 법인회계 : 사회복지법인의 업무전반에 관한 회계
- 시설회계 :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회계
- 수익사업회계 :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 법인회계와 시설회계 구분 철저('13.10월 감사원 지적 사항)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일부발췌

따라서 법인의 회계와 시설(사회복지관)의 회계는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혼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추홀구 ◇◇사회복지관에서는 법인 소유의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축조 신고 등록면허세 납부, 법인 재단직원 퇴임식 현수막 제작, 사회복지관 행사(백암 한마음가족송년의 밤) 시 재단 대표이사 명의의 감사패 제작 및 포상금을 시설회계에서 지출하였으며,

서구 □□사회복지관에서는 개관기념(70주년) 행사 시 재단 대표이사 명의의 감사패 및 공로패 제작을 시설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법인회계로 지출하여야 할 비용을 사회복지관 시설회계로 지출하였다.

####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서구청장은**

[시정] 법인회계로 지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회계로 지출된 금액 1,423,600원(미추홀구 973,600원, 서구 450,000원)에 대하여 법인으로부터 환수하여 시설회계로 세입처리하시고, 향후 법인회계와 시설회계를 혼용하여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복지관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